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 에 관한 공청회

2004. 9. 13

주관 : 한국개발연구원

후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기획예산처

목 차

<개 회 사>	1
<공청회 개요>	3
I. 특별회계 정비방안	4
1. 검토배경 및 추진경과	4
가. 그 동안의 재정개혁	4
나. 특별회계·기금 정비의 배경	5
다. 추진경과 및 계획	8
2. 특별회계의 현황과 문제점	9
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9
나. 특별회계 현황	11
다. 특별회계·기금의 문제점	12
3. 특별회계 정비방안	16
가. 정비의 원칙	16
나. 정비의 개요	17
다. 세부 정비방안	18
4. 향후 발전방향	25

II. 기금제도 개선방안	29
1. 기금운용 현황 및 문제점	29
가. 기금운용 현황	29
나. 기금운용의 문제점	30
다. 기금정비의 어려움	31
2. 기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32
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간 역할 분담의 회복	32
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개념 요약	32
다. 기금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	33
3. 기금 정비방안	37
가. 그룹1 : 적정한 자체 조성재원이 없이 정부출연 또는 차입금에 의존하 는 기금	38
나. 그룹2 : 자체 조성재원이 있으나 사업과의 연계성이 낮아 통합재정의 틀 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필요가 있는 기금	40
다. 그룹3 : 타 기금과 통합함으로써, 사업의 기획이나 운영·관리에 있어 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기금	41
라. 그룹4 : 연금·보험성 기금,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이 있는 기금, 사업 의 신축적 운영이 필요한 기금, 장기채무 상환시까지 존치되는 한시적 기금	43
4. 향후 과제	44

표 목 차

<표 I-1> 부담금 수	7
<표 I-2> 징수금액	7
<표 I-3> 사용내역(2002년)	7
<표 I-4> 특별회계 현황	11
<표 I-5> 정비에 따른 특별회계·기금 수의 감소	16
<표 II-1> 설치목적별 기금 현황	46

그림목차

[그림 I-1] 통합재정 지출 및 순융자	6
[그림 I-2] 준조세 및 부담금의 종류	6
[그림 I-3]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차이	10
[그림 II-1] 재정자금 흐름도	45

개 회 사

존경하는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님,
공청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김동건 교수님과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

지난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각 부문별로 여러 가지 개혁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재정분야에서도 그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로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기금평가 실시, 준조세 정비,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배분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관리체계는 아직도 후진적인 모습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일반회계, 22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57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예산체계입니다. 이들 각 회계와 기금은 당초 여러 가지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계와 기금들 사이의 복잡한 내부거래로 인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국내학계뿐 아니라 IMF,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원이 여러 회계와 기금으로 분할되어 사용됨에 따라 상황변화에 맞추어 신속적으로 재원을 재배분할 여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는 자금이 남아도는 반면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는 자금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종 부담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그 필요성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남아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금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금에 대한 국회심의 및 의결절차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정비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즉,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존치필요성 자체를 검토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존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들은 일반회계로 이관 하거나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회계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정비방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기획예산처의 「기금평가단」이 중심이 되어 정비방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연구기관과 대학교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주축이 되어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방안을 공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이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후원 하에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금년중에 최종적인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디 오늘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관리제도가 더 한층 선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9. 13.

김 중 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공청회 개요

- 제 목 :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
- 일 시 : 2004년 9월 13일(월) 15:00~17:30
- 장 소 : 정부중앙청사(광화문) 별관 2층 대강당
- 주 관 : 한국개발연구원
- 후 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획예산처

<주요 내용>

- 사 회 : 김동건 (서울대학교 교수)

□ 발 제

- 특별회계 정비방안 (고영선, KDI 재정공공투자관리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기금 정비방안 (조성일, 중앙대학교 교수)

□ 토 론

- 김병덕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
- 김조원 (감사원 국가전략사업평가단장)
-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소장)
- 박정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 정규재 (한국경제 편집국 부국장)
- 천 룡 (재정경제부 국고과장)
- 황성현 (인천대학교 교수)

□ 진행순서

- 15:00 ~ 15:05 개회사 (김중수 KDI 원장)
- 15:05 ~ 15:15 인사말씀 (윤성식 정부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 15:15 ~ 15:45 발 제
- 15:45 ~ 17:00 토 론
- 17:00 ~ 17:30 질의 응답

I. 특별회계 정비방안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1. 검토배경 및 추진경과

가. 그 동안의 재정개혁

- 예산성과금제도 도입(1999)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1999)
- 준조세 정비(2000)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2002)
-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실시(1999) 및 성과관리제도 도입(2003)
- 기금제도 개선
 - 기금운용평가 실시(2000),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심의·의결절차 도입(2001)
 - 지속적인 기금정비
 - 기금수(개) : (1961) 3 → (1980) 45 → (1990) 98 → (1993) 114 → (1996) 76 → (2000) 61 → (2001) 62 → (2002.1) 57 → (2002.9) 58 → (2003.4) 59 → (2004.4) 57
 - 기금존치평가 도입(2003) 및 실시(2004)
- 국고보조사업 정비(2004)
-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2004)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2004)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 설치(2004)
 - ⇒ 재정제도의 선진화
 - ⇒ 재정건전성 확보, 예산배분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향상

나.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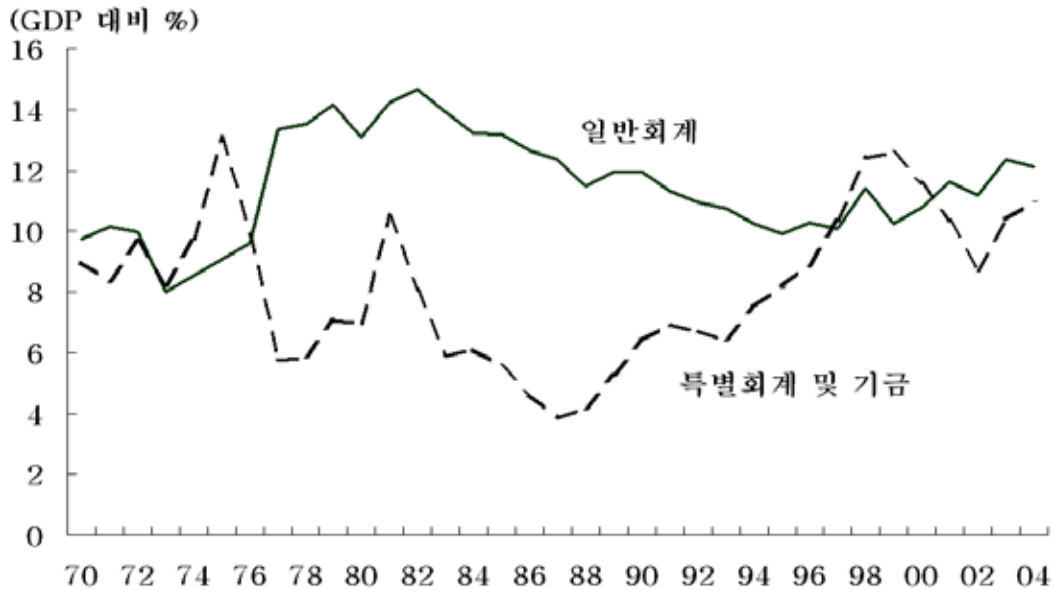
□ 국내 학계 및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개선 권고

- IMF(“Korea: Further Reforms in Fiscal Management,” 2001)
 - 한국의 복잡한 예산구조는 여타 OECD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투명성을 극도로 저해하고 있음.
- IMF의 권고안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일반회계 및 일부 신탁기금
 - 신탁기금(trust fund)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 여타 모든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합하거나 공기업(기업특별회계)으로 분류하여 재정범위에서 제외
- IMF는 특별회계 · 기금의 폐지가 일선부처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나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출규모 증가

- 전체 통합재정 지출 및 순융자 가운데 특별회계 · 기금의 비중이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약 50%로 상승

[그림 1-1] 통합재정 지출 및 순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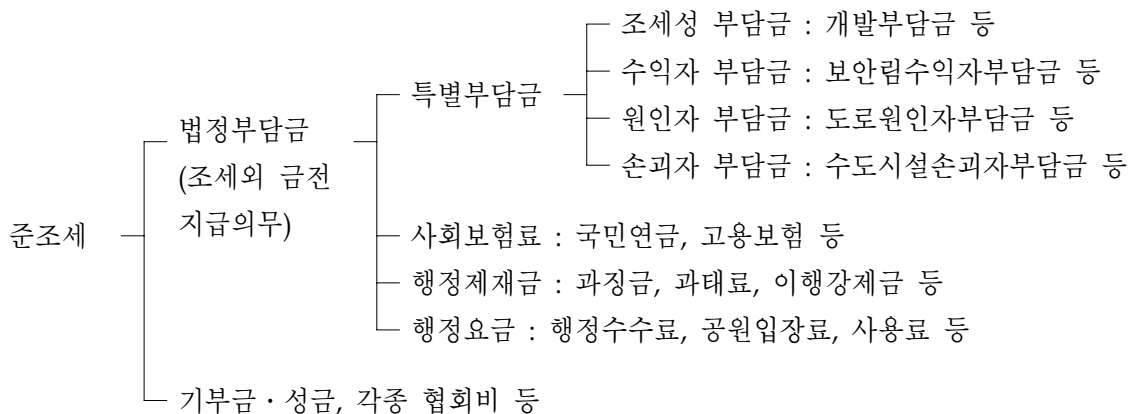


주 : 2004년은 예산

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각년도; 기획예산처, 『예산개요 참고자료』, 2004.

□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이 되는 부담금의 수와 규모가 급격히 증가

[그림 1-2] 준조세 및 부담금의 종류



자료 : 기획예산처, 『기금별 현황자료』, 2004. 7.

〈표 1-1〉 부담금 수

(단위 : 개)

	1961~1969	1970~1979	1980~1989	1990~2000	2001	2002
신 설 (환경 및 건설교통)	7 (5)	7 (2)	20 (8)	65 (32)	12 (10)	2 (-)
폐 지	-	-	-	1	9	1
누 계	7	14	34	98	101	102

〈표 1-2〉 징수금액

(단위 : 10억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징수금액 (증가율)	3,671.5 (-23.1)	3,862.0 (5.2)	4,171.7 (8.0)	6,293.8 (50.9)	7,448.2 (18.3)

〈표 1-3〉 사용내역(2002년)

(단위 : 10억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	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징수금액 (비율)	3,835.8 (51.5)	1,973.1 (26.5)	420.6 (5.6)	365.1 (4.9)	853.6 (11.5)	7,448.2 (100.0)

□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 budgeting)의 실행에 애로

- 회계·기금 간의 복잡한 내부거래로 인해 관서별·분야별 총액예산을 사업별로 배분하는 데에 실무적 애로를 경험

다. 추진경과 및 계획

□ 추진경과

- 특별회계 정비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계전문위원회에 T/F 구성(2004.5)
 - 각 부처 및 기획예산처 의견을 들어 정비안 마련(2004.5~8)
- 기금 정비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03.12)으로 기금존치평가 정례화
 - 기금존치평가단을 설치하여 존치평가 실시(2004.3~7)
 -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비안 마련(2004.8)

□ 향후 추진계획

- 관계 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수렴(2004.9~10)
- 정비방안 확정(2004.10~11)
-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2005년)
- 일괄정비법을 마련하여 2005년 상반기 국회 통과 추진
- 원칙적으로 2006년 예산부터 반영

2. 특별회계의 현황과 문제점

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 일반회계

- 일반세입으로 일반지출을 수행하는 국가운영의 기본회계
 - 국방, 교육, 복지, SOC, 교부금, 인건비 등 다양한 사업 수행
-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수수료·벌금 등 세외수입을 추가적인 재원으로 함

□ 특별회계

- 특정한 사업 또는 자금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 기업방식 운영 : 철도·통신·조달·양곡관리 등
 - 특정분야 지원 : 교통시설·농어촌·교육·환경개선 등
- 사업수입, 목적세·수수료·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함

□ 기 금

-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
 - 국민연금, 정보화촉진, 남북협력, 공적자금상환 등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
- 국회법 개정('01.21.31)에 따라 기금도 국회심의를 받게 되어 특별회계와 큰 차이는 없으나, 운영상 자율성이 다소 높음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범위 내에서는 국회심의 없이 변경 가능

[그림 1-3]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차이

구 분	예 산		기 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1. 설치목적	○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 사업 운영 ○ 특정 자금 운용 ○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	○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2.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용자사업 등 수행
3. 확정절차	○ 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예산처가 정부예산안 편성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 좌 동	○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조정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4. 집행절차	○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 좌 동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5. 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6. 계획변경	○ 추경예산편성	○ 좌 동	○ 주요항목지출금액의 30% 이내 변경시 국회심의 불필요

나. 특별회계 현황

□ 2004년 현재 22개의 특별회계 설치·운영중

○ 기업예산회계법 및 개별 특별회계법에 근거

• 특별회계 수(개) : (1990) 18 → (1995) 23 → (2004) 22

□ 2004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계 67.7조원(일반회계 대비 57.2%)

○ 일반회계 전입 제외시 47.9조원

〈표 1-4〉 특별회계 현황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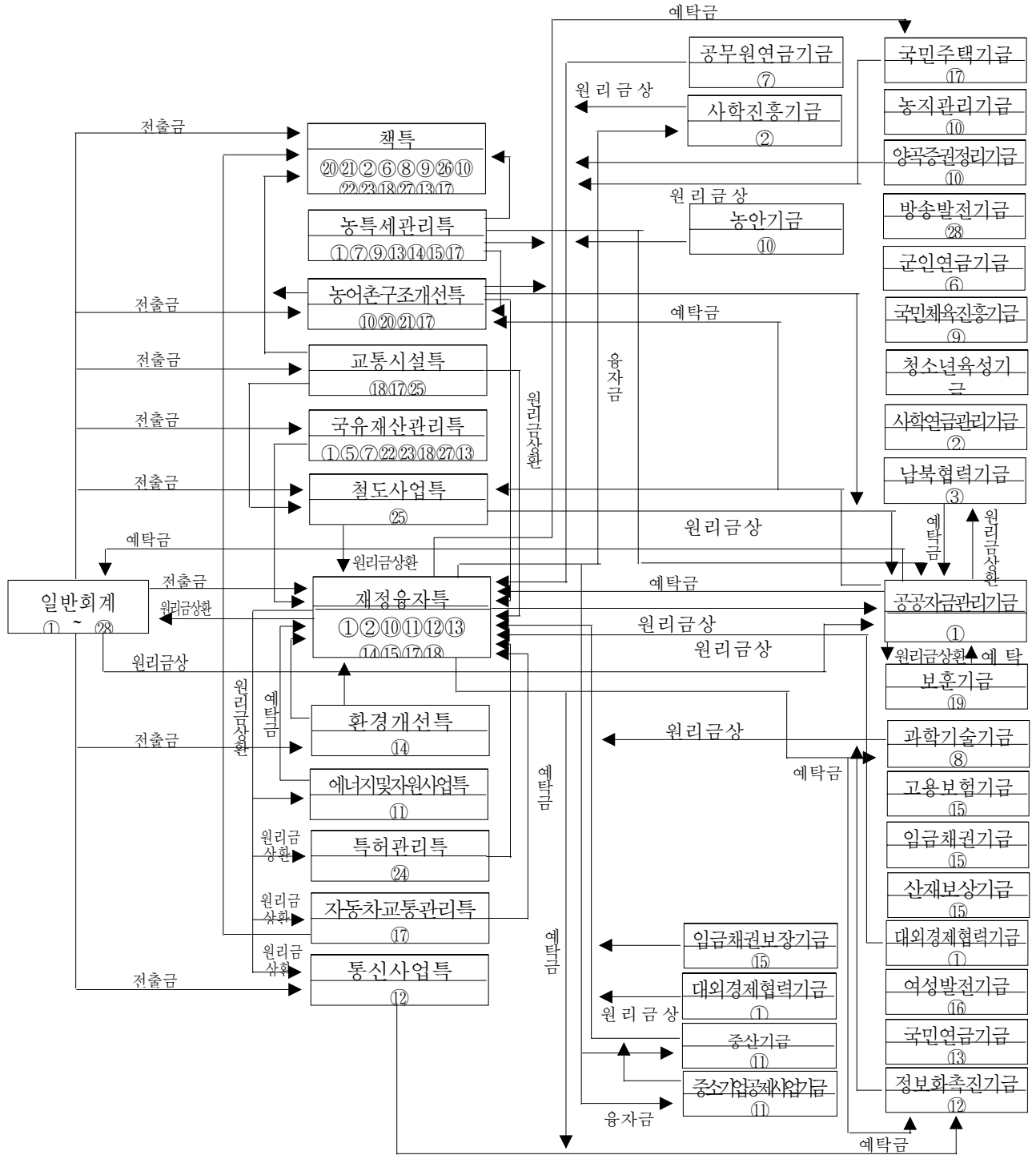
구 분	특별회계	2004예산	주 세입원
특정사업의 운영 (5개)	철도사업 ^{주)} , 통신사업 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	12.5	사업수입
특정자금의 운용 (1개)	재정용자	15.6	공자기금 예수금
특정세입 으로 특정세출 충당 (16개)	목적세	농특세, 지방양여금관리 ¹⁾ , 교통시설, 지방교육양여금,	농특세, 교통세 교육세, 전화세 주세
	부담금	토지관리 ^{주)} , 에너지, 환경개선, 자동차교통관리	개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수수료	등기, 국립의료원, 특허관리, 우체국보험	등기수수료, 특허수수료 등
	기 타	국유재산, 교도작업, 농어촌구조개선, 군인연금	국유재산매각대, 일반회계전입금, 기여금, 보험료 등
계	22개	67.7	

주 : 2004년 말 폐지 예정

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문제점

- 재정구조의 복잡다기화로 국가재정 현황이 불투명
 - 일반회계(1) + 특별회계(22) + 기금(57) = 80개 회계·기금
 - 예산이 다수 회계·기금으로 구성되고 회계·기금간 전출입이 많아 전체 재정규모와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
 - 재정의 규모를 파악함에 있어 총계와 순계를 별도로 계산해야 함.
 - 특히, 농업·교육 등 분야는 회계·기금간 전출입이 매우 복잡하여 재정 당국 실무자 외에는 이해가 곤란(참고 1·2·3 참조)
- 칸막이식 재정운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하
 - 회계·기금 간 재원이동이 제한되어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는” 현상 발생
 - '02년 말 여유재원이 2천억원 이상인 기금이 15개(13.3조원)인 반면, 사업비의 40% 이상을 예산·차입에 의존하는 기금이 10개(19.1조원)
 - 기업특별회계(철도·조달·통신·양곡관리)의 경우에만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 가능
 - 실제로는 통신사업특별회계만 일반회계 전출금 발생('03년 1,493억)
- 일반회계 의존으로 특별회계·기금의 존치의의 저하
 - 자체수입이 거의 없고 사업비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출연에 의존하는 특별회계·기금이 다수
 - '04년 특별회계 총세입 67.7조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 29.2%(19.8조원)
- 회계·기금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중복지원도 발생
 -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한 특별회계·기금을 설치
 - 유사·중복되는 특별회계·기금 다수

참고 1 재정자금 흐름도



- ① 재정경제부 ② 교육인적자원부 ③ 통일부 ④ 외교통상부 ⑤ 법무부(대법원) ⑥ 국방부 ⑦ 행정자치부 ⑧ 과학기술부 ⑨ 문화관광부 ⑩ 조달청
 ⑪ 산업자원부 ⑫ 정보통신부 ⑬ 보건복지부 ⑭ 환경부 ⑮ 노동부 ⑯ 여성부 ⑰ 건설교통부 ⑱ 해양수산부 ⑲ 국가보훈처 ⑳ 조달청
 ㉑ 통계청 ㉒ 농촌진흥청 ㉓ 산림청 ㉔ 특허청 ㉕ 철도청 ㉖ 국정홍보처 ㉗ 해양경찰청 ㉘ 방송위원회

참고 3 교육예산의 회계구조

(단위 : 조원)

[교육부 예산]

	2003	2004
○ 일반회계	20.69	22.04
- 국고(본부, 대학 등)	3.67	3.8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02	18.20
· 봉급교부금	4.67	5.03
· 경상교부금(내국세 13%)	11.67	12.26
(일반교부금)	(10.61)	(11.15)
(특별교부금)	(1.06)	(1.11)
· 증액교부금	0.68	0.92
(중학교무상교육)	(0.55)	(0.84)
(기타)	(0.13)	(0.08)
○ 교육세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관리	4.09	4.24
○ 재정용자특별회계	0.03	0.03
○ 기타 특별회계	0.09	0.08
(농특세 0.002, 국특회계 0.06, 기타 0.02)		
총 계(순계)	24.90	26.39

[시·도 교특 예산]

	2003	2004
○ 중앙정부지원	21.27	22.5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02	18.20
- 지방교육양여금	4.09	4.24
- 보조금	0.16	0.15
○ 자치단체전입금	5.39	5.71
- 지방교육세	3.72	3.98
- 중등교원 봉급	0.58	0.61
- 담배소비세	0.49	0.49
- 시·도세 3.6%	0.56	0.60
- 기타전입금	0.04	0.03
○ 자체수입	0.99	1.01
- 납입금	0.72	0.78
- 이월금 등	0.27	0.23
총 계	27.65	29.31

타부처 교육예산
2003년 : 0.40
2004년 : 0.43

<교육재정 총규모>
 2003년 : 30.96조원(GDP의 4.72%)
 2004년 : 32.75조원(GDP의 %)
 * [국가예산+자치단체전입금+자체수입
 (납입금제외)+타부처교육예산]

3. 특별회계 정비방안

가. 정비의 원칙

□ 특별회계와 기금을 일원화하여 재정구조를 단순화

- 기금도 국회심의를 받게 되어 특별회계와 기금 간에 큰 차이가 없어졌으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현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개편) 일반회계, 기금
- 기대효과
 - 재정구조를 단순화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 (과거) 특별회계·기금제도의 부분적 개선 → (현재) 일관된 원칙에 따른 총괄적 정비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재정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확보

□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폭 정비(79개 → 47개, △32)하여 최소한으로 운용

- 기업방식 또는 신축적 운용의 필요가 있거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존치
-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기금은 존치

〈표 1-5〉 정비에 따른 특별회계·기금 수의 감소

	현행	정비방안		정비결과
		폐지	통합	
특별회계	22	10	5 (7→2)	8 (신설1) → 47*
기금	57	10	8 (11→3)	

나. 정비의 개요

□ 특별회계 정비방안(22개 → 8개, △14)



※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경우
존치되는 특별회계는 기금으로 전환

다. 세부 정비방안

□ 유사 회계 · 기금 통합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농특세관리특별회계는 농특세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이 주된 기능
 - 농특세의 60% 정도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출하고, 나머지를 행자부 등 7개 부처의 농어촌 관련사업에 투자
- 농특세관리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통합하되, 별도의 계정을 두어 운영

○ 양곡관리특별회계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양곡관리계정)으로 운영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및 유통구조개선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능이 유사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재정에 여유가 있으므로 양곡관리계정의 일시적 적자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군인연금특별회계와 군인연금기금

-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통합 · 일원화하여 운영할 필요
 - 국회에서도 특별회계와 기금의 중복에 대하여 계속 지적
 - 공무원연금의 경우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영중

□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 현재 3종의 목적세 및 관련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음.

목적세	도입	존치시한	관련 특별회계
교통세	1994년	2006년 말	· 85.8%→교통시설특별회계 · 14.2%→지방양여금특별회계('04년말 폐지)
교육세	1982년	-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1994년	2014년 말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세 폐지와 함께 폐지
 - 교통세 수입 외에 매년 일반회계의 추가지원을 받고 있어(2004년 2.2조 원, 총 세입의 16.3%), 별도 운영의 실익이 적음
 - SOC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특별회계를 폐지하더라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가능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폐지
 -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양여하기 위한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폐지
 - 지방양여금 폐지(2004년 말)에 따라 지방교육양여금도 폐지하고, 교육 재정교부금을 인상하기로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협의중
 - 교육세 폐지 여부는 세제개편 과제로 별도 검토
 - 목적세인 교육세를 존치할 경우 이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
 - 교통세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되었다가 특별회계로 출연
 - 과거 방위세(1975~1990)의 경우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지 않고 운영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

□ 부담금·부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 부담금을 존치하는 한 특별회계 유지

- 현재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부담금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되는 사례는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부담금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되는 사례가 일부 있음.
 -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

* 헌법재판소는 문예진흥기금 징수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문예진흥기금이 공연관람자 등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 (2003. 12. 18. 2002헌가2 전원재판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석유제품 수입·판매업자 등이 부담하는 각종 유류부과금을 관련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특별회계 유지

- 환경개선특별회계

- 배출부과금 등 원인자부담금을 환경관련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특별회계 유지

※ 유류부과금(에특), 배출부담금(환특) 등을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 적극 검토

- 특히, 환경오염 관련 원인자부담금은 일반 조세와 유사

□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 특허관리, 등기,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수수료 수입을 일반회계 세입(세외수입)으로 전환
 - 특허수수료(특허), 등기수수료(등기), 진료수입(국립의료원) 등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실비는 현행대로 징수
 -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는 없음
 - 현재 각종 면허료·수수료·입장료·수업료 등이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계상되고 있음.
 - 업무의 성격상 일반회계로 전환하더라도 수수료 수입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노력과 수입간의 연관성이 낮음)
- 특허관리특별회계
 -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특허수수료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계상
 - 특허수수료는 국가의 지적재산권 정책, 국제간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는 것으로써 전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만을 적용할 수는 없음.
 - 만약 수익자부담원칙을 100% 적용한다면 현재 특허행정실비 이상으로 징수되고 있는 특허수수료를 인하해야 함
 - 여유재원의 재특예탁 규모(2000~2004) : 980억원
 - 일반회계로 전환하더라도 특허수수료 수입 상당액 이상을 특허행정 분야에 투자할 필요
 - 심사대기기간의 단축, 특허행정정보화 등을 위한 투자
 - 특허수수료 납부자의 반발 등 논란 소지 해소

○ **등기특별회계**

- **일반회계로 전환**, 등기수수료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계상
- 현재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하게 되어 있으나, 시한을 앞당겨 2005년 말 또는 2006년 말 폐지
- 등기업무 전산화 및 등기소 광역화 등을 위한 투자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

○ **국립의료원특별회계**

- 특별회계로 유지할 실익이 적으므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진료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계상
 - 현재 조달물자구매의 특례, 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등 특례규정이 있으나 실제 적용사례는 거의 없음
- 1975년 이후 계속 일반회계 전입에 의존
 - 자체수입을 과다 편성하여 매년 실적 미달
 -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의료원의 특성상 자체수입을 증대하는 것은 한계
- 다른 공공병원도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음
 - 국립 서울정신병원, 서대문시립병원, 시립아동병원 등
 - 국립재활원, 목포결핵병원도 책임운영기관 지정 전에는 일반회계로 운영
- 회계를 전환하더라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유지하고 자율성 부여

□ 일반회계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특별회계

○ 재정용자특별회계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
- 재정용자는 재정용자특별회계(1.2조원) 외에도 4개 특별회계, 31개 기금에서 수행(총 20.5조원)하는 일반적인 사업으로, 용자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은 낮음.
 - 재정용자사업을 재정용자특별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직접지출과 재정용자를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할 필요가 있으므로 용자사업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최근의 저금리와 민간금융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재정용자사업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낮은 편임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 일반회계로 전환
- 정부시설 및 사법시설 계정은 실질적으로 개별 부처(관리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전환
- 재산관리계정의 경우에도 재산매각수입 등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대체토지매입 등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투자 가능
 - 국유재산관리의 문제점은 회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데에 있음 →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범칙금·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계상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수수료와 다름

→ 교통안전시설 확충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음.

-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일반재원으로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에 더 부합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계정(기관)별로 평가하여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환
- 특별회계라고 해서 반드시 자율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일반회계로 운영하더라도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예산과목구조의 단순화, 이·전용 및 이월 확대 등
- 운전면허시험장과 같이 자체수입이 충분하고 별도 운영의 장점이 있는 기관은 기금으로 전환 검토

□ 기타 특별회계

○ 조달특별회계

- 기업방식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로 유지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중앙보급창 회계를 흡수·일원화
- 예산 외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회전자금(6,800억원)은 기금으로 전환하여 투명성 제고(조달회전기금 신설)

○ 교도작업특별회계

- 기업방식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 유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005년 출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당분간 특별회계로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일반회계 전환 검토

□ 자금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별회계는 존치

○ 통신사업특별회계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우정사업특별회계(가칭)로 통합
- 우편 · 예금 · 보험 사업은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
- 통신사업특별회계의 통신 부문은 일반회계로 전환

※ 예금 · 보험 사업은 장기적으로 민영화 검토

4. 향후 발전방향

□ 지속적인 특별회계 및 기금의 평가와 정비

- 현재 기금관리기본법은 3년마다 기금존치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 (기금운용의 감독·평가) ②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유사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될 필요

□ 예산서의 체계와 과목구조의 전면적 개편

- 현재 예산서는 '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소관(부, 처, 청 등) - 장 - 관 - 항 - 세항'으로 조직되어 있음.
 - 이로 인해 한 부처의 한 조직(실·국 등)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여러 회계와 여러 장·관·항에 분산되어 있어 성과관리와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
-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예산체계를 소관 및 조직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참고 4)
 - 예산서를 '소관 - 항 - 세항'으로 조직
 - 부차적인 정보로서 각 세항에 대해 해당 회계 및 기능을 대응시킴.
- 이 경우
 - 기능별·사업별 예산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우며,
 - 소관 부처의 실·국별 성과관리도 용이할 뿐 아니라
- 무엇보다도 복잡한 회계·기금 구분의 불합리성이 명백해짐.
 - 부담금이나 목적세를 특정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라도,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항 단위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면 됨.
- 또한 조직 단위로 항목구조를 설정할 경우 기업방식의 운영을 위해 존치시키는 특별회계(조달특별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도 일반회계 내에서 하나의 항(프로그램)으로 포함될 수 있음.

참고 4 예산항목구조의 개편 : 건설교통부 도로국의 예

- 기존

회계	소관	장	관	항	세항	
일반회계		수송및 통신	도로	도로운영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타회계전출금	교통시설특별회계전출금(도로계정), 책임 운영기관특별회계전출금	
			건설교통 행정	수송행정	도로국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 계정	건설 교통 부	수 송 및 통신	도로	도로건설	일반국도신설, 국가지원지방도, 시관내국 도대체우회도로건설, 기간국도6차건설, 기 간국도7차건설, 고속도로건설, 기간국도8 차건설, 산업지원도로건설, 교통량조사, 첨 단도로교통체계, 산업단지진입도로, 민자 유치활성화 지원, 기간국도9차건설, 기간 국도10차건설, 교통혼잡도로개선
					도로운영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도시설개량
					타회계전출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전출금
					전대차관 원리금상환	도로차관상환
책임 운영 기관 특별 회계					수원국도유지손익계정, 전주국도유지손익계정, 대구국도유지손익계정, 국토지 리정보원손익계정, 수원국도유지자본계정, 전주국도유지자본계정, 대구국도유 지자본계정, 국토지리정보원자본계정	

- 개편(안)

소관	항	세항	회계	기능
건설 교통 부	도로 운영	도로국 행정	일반회계	도로 수송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일반회계, 교통시설 특별회계, 책임운영 기관특별회계	
		국도시설개량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건설	일반국도신설, 국가지원지방도, 시관내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기간국도6차건설, 기간국도7차건 설, 고속도로건설, 기간국도8차건설, 산업지원도 로건설, 교통량조사, 첨단도로교통체계, 산업단 지진입도로, 민자유치활성화 지원, 기간국도9차 건설, 기간국도10차건설, 교통혼잡도로개선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차관상환		교통시설특별회계	공공부 채거래

□ 부담금 및 목적세를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귀속

- 현재 부담금 및 목적세를 특별회계 및 기금에만 귀속시키고 있으나, 그 법리적 해석은 애매한 상태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부담금을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있음.
 - 중앙정부의 목적세인 방위세를 일반회계에 귀속시킨 사례가 있음.
-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음.
 - ① 수수료·사용료 등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부과되는 부담금
 - ②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시정하기 위한 부담금(과밀부담금, 배출부담금 등)
 - ③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 ④ 목적세 성격의 부담금(유류부과금 등)
- 부담금은 일부 경우(즉, 행정서비스 공급비용의 지불 등 부담자의 관점에서 부담금이 혜택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목적의 재원(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야 함.
 - 행정서비스 대가의 경우 서비스 공급비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면 이는 일반목적의 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사업이나 기관에 모두 귀속시키는 것은 불합리
 - IMF의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은 이들을 조세로 분류하도록 규정(편람의 paragraph 5.99 참조)
 - 외부효과 시정을 위한 경우 이는 재원조달과 무관한 특정한 정책목표(외부효과 시정)를 위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관련 사업과 연관시켜 관련 사업에만 지출할 수 없고 일반재원에 귀속시켜야 함.
 -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과 목적세 성격의 부담금 역시 마찬가지임.
- 이와 같이 특별세와 대부분의 부담금을 일반회계에 귀속시킬 경우, 관련 특별회계나 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합되어야 할 것임.

Ⅱ. 기금제도 개선방안

-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

조 성 일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1. 기금운용 현황 및 문제점

가. 기금운용 현황

- 예산회계법 제7조에 따르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우리나라 재정운용은 일반회계(2004년 기준 118조원), 특별회계 22개 (68조원), 기금 57개의 80개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 그 중, 기금의 운용규모는 총액기준으로 2004년도 285조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4배이나, 여유자금운용 95조원, 정부내부지출 55조원, 차입금상환 60조원과 기금관리비 2조원을 제하고 나면 사업비 규모는 73조원에 이른다. 여기에서 의무지출의 성격을 가진 장기채무관리와 사회보험지출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특정사업을 지원하는 경상지출은 30조원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나. 기금운용의 문제점

- 기금은 본래의 취지대로 잘 활용될 경우,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많은 주머니로 나뉘어 많아질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따른 국자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칠 수가 있다.
- 우리나라 재정운용이 일반회계, 22개의 특별회계, 57개의 기금의 80개 주머니 별로 칸막이를 치고 나뉘어서 집행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부처별 또는 부처내 국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이 배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또한, 자금이 부족한 기금은 전략적 과제를 지원 못하는 반면에 자금이 남는 기금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부처별 기금이나 특별회계 간 자금의 탄력적인 이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정 운용이 경직화되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각 부처별로 기금의 차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범정부차원의 우선순위나 사업별 성과에 따라 재원이 차등 배분되지 않고, 신규사업 예산을 먼저 배정한 후에는 대부분 부처별 회계/기금 안에서 각 사업별로 전년도 집행 규모에서 몇 %씩 증액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다보면, 국가적으로 시급한 전략사업을 위해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임으로써 국가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재정운용의 주머니가 80개나 되고 동 80개의 주머니 간에도 자금의 진출입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확히 어떤 분야에 얼마의 재원이 투입되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 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도표 참조). 이에 따라, 동일한 사업 또는 기업에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유사한 기능의 사업을 여러 개의 기금에서 수행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각 기금내의 사업구조도 복잡하고 다기화되어 있어, 적정한 예산 통제와 성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2003년 세항기준의 사업수는 축산발전기금 39개, 정보화촉진기금 36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31개, 국민주택기금 25개, 국민체육진흥기금 24개이며, 세항사업 자체도 다시 세세항 사업 및 그 하부사업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하부사업의 집행의 효율성을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 국가재원 활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기금정비가 필요하다.

다. 기금정비의 어려움

- 정부는 그 동안 기획예산처 주도로 지속적으로 기금 정비를 추진해 왔다.
 - 1961년 3개의 기금 신설 이래, 1993년까지 114개의 기금으로 급증하였으며 1993년과 1999년 두 차례 정부의 대규모 기금정비 노력으로 2000년 61개의 기금으로 축소되었다.
 - 2001년 이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기금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4년 현재 57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통해, 기금정비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각 부처는 재원확보의 용이성과 사업집행의 자율성 등으로 경쟁적으로 기금을 설치해 왔고 또 기금 정비에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 각 산업별 협회와 유관 단체 등을 포함한 기금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은 예산지원 중단을 우려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 또한, 기금운용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공단 등의 조직들도 조직의 축소 내지 통폐합에 대해 기금정비를 정치적 이슈화하여 기금정비를 어렵게 해 왔다.
 - 그러나, 기금은 국가재정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조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설치·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2. 기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간 역할 분담의 회복

-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들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운용되도록 환원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 기금과 특별회계는 존치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한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올바른 재정개혁의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 연금 기금(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기금), 보험성 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일부 금융성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성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개념 요약

- 일반회계
 - 일반세입으로 일반지출을 수행하는 국가운영의 기본회계로서 국방, 교육, 복지, SOC, 교부금, 인건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수수료, 벌금 등 세외수입을 추가적인 재원으로 하고 있다.
- 특별회계
 - 특정한 사업 또는 자금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 현재 22개의 특별회계는 철도, 통신, 조달, 양곡관리 업무 등 기업방식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와 교통시설, 농어촌, 교육, 환경개선 등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목적세, 수수료, 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있다.

□ 기 금

-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기금은 정부 및 민간의 출연, 타 기금 및 회계의 전입, 차입금, 부담금,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 1999년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운용도 국회 심의를 받게 됨으로써 특별회계와 큰 차이는 없으나, 운용상 자율성이 예산보다 다소 높고 불용자금이 기금에 축적되는 것이 특징이다.
-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 범위 내에서는 국회 심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 기금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

- 법(예산회계법 제7조)의 정신에 따라 기금다운 기금만 존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불가피한 이유 또는 필요에 의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이관이 어려운 기금은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기금다운 기금(예산회계법 제7조)의 해석

(1) “특정한 목적이 있고”

- 기금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금의 설치 목적이 한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동 목적의 달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타 예산이나 타 기금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할 것이며, 셋째, 설치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특정목적은 현 시점에도 유효한 것이어야 기금의 존치 타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 모든 기금은 각 기금에 대한 개별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기금설치의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표 II-1> 참조).
- 그러나, 기금설치 목적이 한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히 사업성 기금의 경우에는 부처 또는 모든 정책목표를 망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대부분 기금의 설치목적은 현 시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많은 기금의 설치 목적이 해당부처의 예산사업이나 타 기금의 목적이 중복되거나 또는 유사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 목적이 동 기금만의 고유한 목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 또한, 현재와 같이 추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은 상당기간 내에 불가능할 것이다.
-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된 목적에 대해 기금이 특정 목적을 갖고 있고 동 목적이 유효한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기금이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지의 기준에 의한 기금 존치에 대한 평가 이전에 기금의 설치목적은 그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특정한 자금이 있고”

- 예산회계법 상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로 미루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을 “특정한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특정한 자금이란 수익자부담원칙이나 원인자부담원칙 등에 부합하는 기금 조성재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연금 기금과 보험성 기금 등의 보험료 수입, 수계관리기금의 물이몽부담금과 같은 재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반해, 정부의 허가권에 의한 수익에 대한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 또는 수익금 배분을 특정 재원으로 볼 수 있는가는 각각의 조성재원과 사업의 내용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이나 원인자부담원칙 등의 기준을 가지고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
- 개별 부처가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징수하는 부담금과 수익금의 경우, 기금 설치 당시의 기금조성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질 경우 특정 기금에 한정해서 담아 둘 당위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 예를 들면, 복권 수익금,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경륜·경정·투표권 수익금, 마사회 수익금 등의 재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재원으로서 복권기금 또는 일반예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통신사업자 출연금, 방송발전기금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명확히 부합되지 않아 특정 기금의 재원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일부 특정사업에의 예산 배분에 우선권을 인정하더라도 정부 재정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외여행자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등도 국가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것뿐이므로 정부의 수입으로 통합 관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별도의 기금을 운용할 필요”

- 앞서 지적한 대로, 예산이나 타 기금의 목적과 중복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 어느 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금 설치목적에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신축적·자율적 운용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으로는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축적·자율적 운용은 그에 따른 예산집행의 자의성과 예산통제의 이완 등으로 인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 따라서, 기금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기금이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많은 기금들이 예산으로의 통합이 불가능한 근거로 용자사업의 수행 필요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금의 용자사업이 대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해도 일부 장기용자 사업을 제외하면 수혜자들에 대한 용자지원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출자사업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개입으로 인한 인센티브 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고위험 고수익을 근간으로 하는 자생적인 벤처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에 투자된 출자사업의 사후관리가 보다 더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된다.
- 기금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으로서, 사업의 탄력적 운용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의 집행실적이 운용계획의 40-95% 수준으로서 운용계획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필요한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에 대해 적시에 추경에

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탄력적 운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이나 구제역 같은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예비비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적으로, 자율적 운용 및 신축적 운용의 장점을 살려서 예산과 다른 특성의 사업 수행을 통해 예산과는 다른 성과를 내고 있는 기금을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 앞서 기술한대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금에 한하여 존치하고, 그렇지 못한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을 기금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 현재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된 목적에 대한 유효성의 평가는 무의미하므로, 기금 설치목적에 그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 이와 함께, 기금의 신설도 기금의 존치여부 평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한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후에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3. 기금 정비방안

- 본 기금 정비방안이 기금이 폐지함으로써 기금이 수행하던 사업도 폐지할 것으로 권고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일반예산의 사업들과 동일한 차원에서 범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 그룹1 : 적정한 자체 조성재원이 없이 정부출연 또는 차입금에 의존하는 기금

-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이 낮거나 예산사업과의 차별성이 적은 기금은 사업은 용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상사업과 함께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에 해당하는 기금은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정보화촉진기금의 일반계정 등이다.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도 이에 해당하나, 본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의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할 경우 본 기금의 최초 재원의 일부를 구성한 대일청구권 20억원에 대한 귀속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비록 이 자금은 그 동안의 사업지출을 통하여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본 기금의 조성재원 중 일정액을 출연하여 공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본 기금의 일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본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인 승모사업, 묘소단장사업, 편찬사업 중에서 승모사업은 사업 성격과 소요 재원 규모 면에서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묘소단장사업과 편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적인 기관에서 수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 광복회에 맡기는 것도 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이 있거나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여건이 변화될 때까지 존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남북협력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수산발전기금, 쌀소득보전기금, FTA이행지원기금 등은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금으로 평가된다. 다만, 수산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수산물가격안정기능이 농림부로부터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누적되는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을 명확히 마련한다는 전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채 및 재정투융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통합하여 기금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대외경제협력기금(장기융자)과 사학진흥기금(직접융자)의 경우에는 직접융자 방식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의 민간금융시장의 여건상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금으로서 당분간은 존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학진흥기금의 경우에는 교육환경의 변화로 퇴출을 포함한 사학의 구조조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부실 사학 양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는 소액의 분산 융자지원 대신 전략적으로 엄선한 소수의 사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제한된 정부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융자사업 중 직접융자 방식의 비중이 20% 수준으로서 대하방식의 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고 직접융자 방식도 이차보전이나 신용보증사업으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일반예산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민간주택금융시장에서 대출만기구조의 장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양곡증권정리기금은 2010년 차관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이내에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농지관리기금의 농지관리계정은 폐지하고 영농규모화사업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쌀 시장 추가개방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농지은행 설립이 추진되는 등 농업과 농지관련 제도와 환경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기금 통폐합 등

의 급격한 제도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기금을 유지하되 환경변화의 동향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나. 그룹2 : 자체 조성재원이 있으나 사업과의 연계성이 낮아 통합재정의 틀 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필요가 있는 기금

-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쇠퇴한 기금은 사업의 폐지와 함께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사업의 신축적 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기금은 용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상사업과 함께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이 이에 해당되며,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신용보증사업은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하고 축산발전기금 사업 중 축산물수급조절사업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통합·운영(가칭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부담금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사업의 신축적 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기금은 용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상사업과 함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이관하고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에는 사업과의 연계성이 없는 경륜·경정 수익금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사업도 일반예산으로 이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사행성 사업인 경륜·경정 사업의 수익금을 어떤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일반예산의 세외수입화하여 재정지출에 충당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가 문제 된다면, 차선택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을 체육청소년기금(가칭)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교류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방송발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부담금과 정보화촉진기금의 출연금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바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면 차선택으로 부담금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담금이 폐지되었으나 예산으로의 통합이 어려운 기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비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보훈기금의 경우, 대부사업을 대하방식이 아닌 직접 용자방식으로 수행하고 있고 본 기금의 용자수혜자들의 신용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민간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어, 용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단기간 내에 예산사업으로 이관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당분간 본 기금은 존치하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방안 등 대부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공연시설모금이 2004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부담금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관리·평가가 불필요해 졌고 기 조성된 재원으로 추가적인 정부출연 없이 사업 수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 기금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조직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어, 정부출연금에 의해 조성된 기금의 사용에 대해 사후 관리적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자금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룹3 : 타 기금과 통합함으로써, 사업의 기획이나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두 기금 모두 동일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고 청소년사업은 대부분 체육활동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두 기금 사업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5개 신용보증기금은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을 통해서 중복기능의 통합과 전문성 제고에 따른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특히, 중복 신용보증 해소, 신용평가 노하우 및 신용정보의 공유, 위험관리와 구상권 관리기능 통합 및 효율화, 기금관리비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 통합을 반대하는 논리로 보증기금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가 많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정부가 손실 전액을 보전해 주는 체제하에서는 공공 보증기금들의 경쟁은 결국 정부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2003년도 기준으로 5개 보증기금들의 대위변제 규모는 4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 4대강 유역 수계관리기금도 통합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지자체 대표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각 강별 수계관리위원회 체제로는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의 추진이 어렵고 특정 지자체가 아닌 전체 유역주민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 이는 상수원 1급수 달성이라는 4개 기금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합하고 동 위원회에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4개 기금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다만, 4대 강별로 부담금 납부자와 수혜자가 각기 연계되어 있고 부담금 요율과 일부 사업의 차이를 고려하여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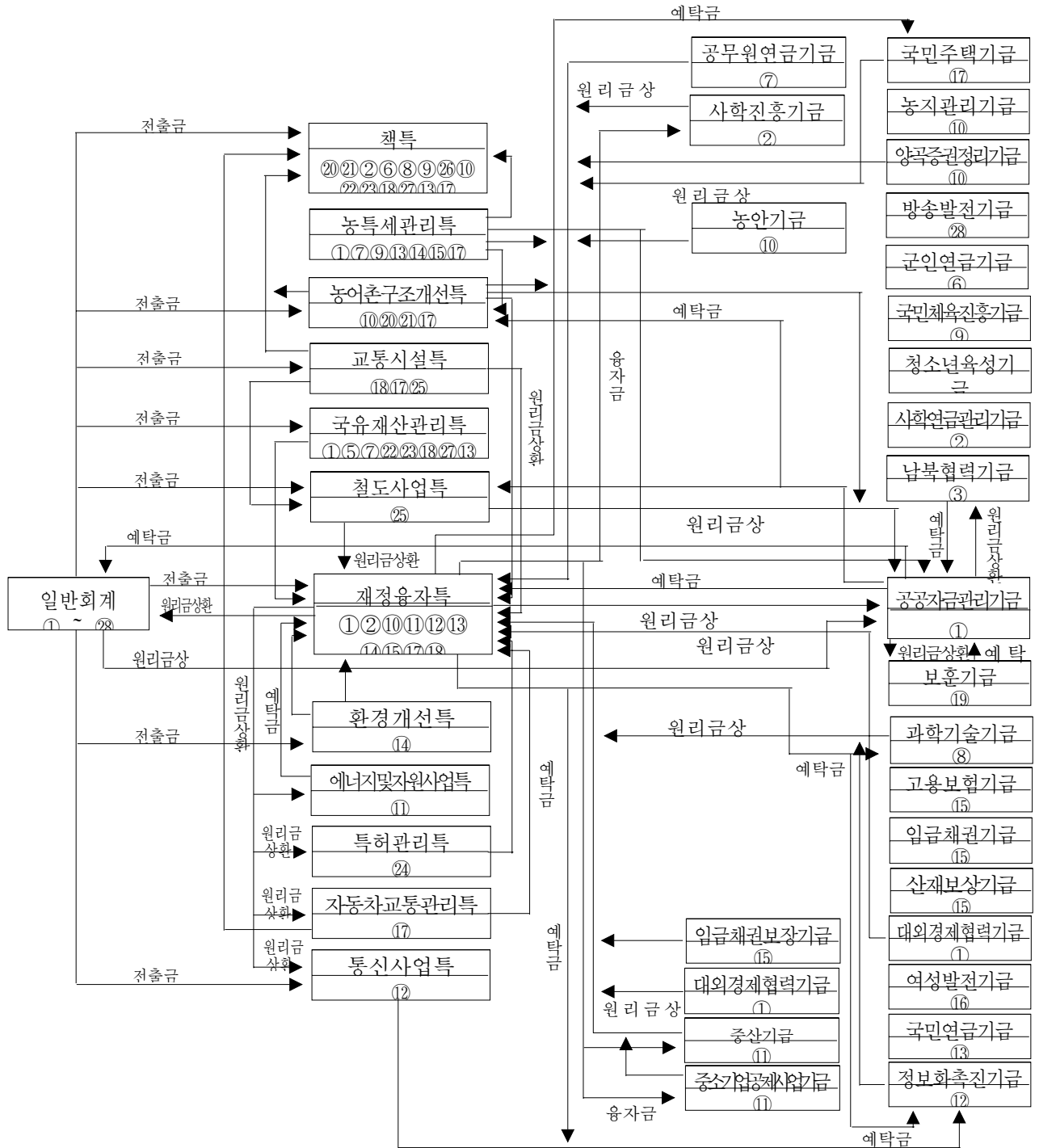
라. 그룹4 : 연금·보험성 기금,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이 있는 기금, 사업의 신
축적 운영이 필요한 기금, 장기채무 상환시까지 존치되는 한시적
기금

- 연금·보험성 기금으로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수출보험기금, 건강보험기금(예정)이 해당된다.
- 재원-사업간 연계성이 있는 기금으로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군인복지기금,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계정)이 해당된다. 농지관리기금의 농지조성계정의 경우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여유자금은 농지관리계정보다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신축적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기금으로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이에 해당된다.
- 장기채무 상환시까지 존치되는 한시적 기금으로는 공적자금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예보채상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이 해당된다.

4. 향후 과제

- 앞서 제안한 기금 정비방안에 대해, 기금의 소관부처를 비롯하여 기금으로부터 직접 혜택을 받아온 각 산업별 협회, 단체, 기금운용을 위탁 수행해 오던 공단이나 보증기금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본 기금 정비방안은 기금을 폐지함으로써 기금이 수행하던 사업도 폐지할 것을 자동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일반예산의 사업들과 동일한 차원에서 범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수행되어야 하며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런 관점에서 기금폐지에 대한 반발이 큰 기금일수록, 동 기금이 수행해 오던 사업의 타당성이 낮거나 비효율적인 요소가 컸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본 기금 정비방안의 효과적인 추진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재원의 안정성과 사업의 내용 및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개선의 시급성이 있어 조건부 존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금들도 다수 있었으나, 이번 평가의 초점이 존치 여부라는 관점에서 존치로 평가하였음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존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설치 목적의 조정, 기금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의 발굴, 사업구조의 개편, 재원조성 방법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각 기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1] 재정자금 흐름도



- ① 재정경제부 ② 교육인적자원부 ③ 통일부 ④ 외교통상부 ⑤ 법무부(대법원) ⑥ 국방부 ⑦ 행정자치부 ⑧ 과학기술부 ⑨ 문화관광부 ⑩ 농림부 ⑪ 산업자원부 ⑫ 정보통신부 ⑬ 보건복지부 ⑭ 환경부 ⑮ 노동부 ⑯ 여성부 ⑰ 건설교통부 ⑱ 해양수산부 ⑲ 국가보훈처 ⑳ 조달청 ㉑ 통계청 ㉒ 농촌진흥청 ㉓ 산림청 ㉔ 특허청 ㉕ 철도청 ㉖ 국정홍보처 ㉗ 해양경찰청 ㉘ 방송위원회

〈표 Ⅱ-1〉 설치목적별 기금 현황

기금명	소관부처	설치 목적
복권기금	총리실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공적자금상환기금	재정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
대외경제협력기금	"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
외국환평형기금	"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금/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신용보증기금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를 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	"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농어가목돈마련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저축장려금 지급
예보채권상환기금	"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른 공적자금의 차질없는 상환 및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의 원활한 지원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
국제교류기금	외교부	외국과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
방위산업육성기금	국방부	방위산업의 육성과 방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함
군인복지기금	"	군의 제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장병 복지증진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으로 무형전력 극대화
군인연금기금	"	군인연금 급여 준비금 및 기금의 증식
공무원연금기금	행자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가족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
사학진흥기금	"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용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
과학기술진흥기금	과기부	과학기술진흥 및 과학기술 문화창달의 효율적인 지원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원자력 과학기술의 선진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보화촉진기금	정통부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정보통신기반 고도화 및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육성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 도모

기금명	소관부처	설치 목적
문화산업진흥기금	문화부	21세기 지식정보산업의 핵심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 증대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육성 사업의 활성화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구축, 선수육성, 보급사업 지원 및 체육단체,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운영·지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및 유통구조 개선 촉진
축산발전기금	"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확보
농지관리기금	"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지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급
양곡증권정리기금	"	양곡증권의 원리금과 차관양곡의 원리금 등 부채상환
쌀소득보전기금	"	공급과잉 기조와 시장개방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FTA이행지원기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수산발전기금	해수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등 국제어업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육성·발전 도모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산자부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87 채택, '92 가입)에 의거, 규제물질인 프레온가스, 할론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대체물질 개발, 특정물질 배출억제를 추진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 도모
수출보험기금	"	수출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출촉진 및 국민경제발전 이바지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한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함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요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함
금강수계관리기금	"	금강수계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동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의 적정관리로 수질개선 도모
고용보험기금	노동부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함.
장애인고용촉진기금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수행
산재보험및예방기금	"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

기금명	소관부처	설치 목적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노동부	저임금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임금채권보장기금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는 채당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함.
응급의료기금	복지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
국민주택기금	건교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여성발전기금	여성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예산처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민간투자자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 생활편익을 제고함.
부실채권정리기금	금감위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및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 지원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자산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방송발전기금	방송위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중기청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
보훈기금	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선양과 복지를 증진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함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보훈처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심 고취 및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